



새로운 식품안전 국가표준 마련한 중국

상하이지사

중국, 식품안전 국가표준 개정 발표

• 지난 6월 22일, 중국위생건강위원회와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<식품안전 국가표준 간장>(GB2717-2018), <식품안전 국가표준 식초>(GB2719-2018) 등 27개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발표하였다. 새로운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한국제품 수출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



중국 현지에서
판매 중인
각종 식용배합유

① 식용유에 대한 새로운 국가표준 시행

-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을 규범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 21일부터 '식용식물배합유' 제품은 '식용식물배합유(食用植物调和油)'로 명명해야 하며, 라벨에 각 식용식물유의 비율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. 또한 제품에 포함된 원료 중 지방산이 2% 이상인 원료의 명칭과 함량(총 지방산의 질량분수)을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.
- <식품안전국가표준 선포장식품라벨통칙>(GB7718)과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오른쪽 상단에 제시되는 표시 방법으로 성분표 내 또는 성분표 주변에 각 식물식용유의 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. 비율 5% 이하의 식용식물유의 상대오차를 10% 내외로 규정하며, 비율 5%를 초과하는 식용식물유의 상대오차를 5% 내외로 규정하고 있다.

**식품안전 국가표준 식물유 (GB2716-2018)
- 식용식물유 표시 방법**

- a** 콩기름/大豆油(50g/100g),
옥수수유/玉米油(30g/100g),
카놀라유/菜籽油(20g/100g)

- b** 콩기름/大豆油(50%),
옥수수유/玉米油(30%),
카놀라유/菜籽油(20%)

- c** 콩기름/大豆油, 옥수수유/玉米油,
카놀라유/菜籽油的 첨가 비율이 5:3:2

- <식품안전 국가표준 복합조미료>(GB31644-2018)는 신규 제정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이다. 해당 표준조항은 정의, 원료 요구사항, 감관 요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, 배합공정으로 생산한 간장과 식초는 이 표준을 따라야 한다.

중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각종 간장



② 간장과 식초, 종류에 따라 라벨 표기기준 분류

- <식품안전 국가표준 간장>(GB2717-2018) 및 <식품안전 국가표준 식초>(GB2719-2018)는 각각 기존의 <간장 위생표준>(GB2717-2003) 및 <식초 위생표준>(GB2719-2003)을 수정한 조항이다.
-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, 간장 가운데 조제간장은 더이상 '간장'이 아닌 '복합조미료' 관련 기준이 적용되어 라벨에 '간장'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. 대두, 밀 등 미생물을 발효해 만든 양조간장과는 달리, 조제간장은 양조간장과 조미액, 식품첨가제를 배합한 것으로 영양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.
- 식초 역시 마찬가지로 합성식초를 관련 규정에서 삭제하고 감미식초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다. 감미식초는 찹쌀, 멥쌀 등 곡물, 주류 또는 식용 알코올을 단도 또는 혼합으로 사용해 미생물을 발효한 후 식용 설탕을 보조 재료로 첨가해 만든 식초에 해당한다.

국가표준 변경사항 사전에 숙지하고 대처해야

- 중국 해관 신고 시, 중문라벨표기 및 위생검역 등의 항목에서 통관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편이다. 국가표준 변경 공지가 잦은 것은 아니지만, 관련 내용이 해관 공식페이지에 심심치 않게 게재되고 있다.
-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중국해관 홈페이지 등 관련 정보 공식사이트를 늘 주시하며 신속히 대처하기를 바라며, 특히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표준조항을 세부사항까지 숙지하고, 중문라벨 표기사항을 사전에 조정하기를 권한다.